

#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77
------	-----

2022. 12. 21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10월 13일, 김지향 의원(찬성자 16명)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12. 21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지향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, 교육, 훈련,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함(안 별표 5 □ 행정국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)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동향

-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2년 만에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·시행(2022.1.13.)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 임용권한 전반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게 됨<sup>1)</sup>.

---

1) 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후속 입법조치로 개정됨.

- 종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(속기·방호·시설관리·운전·관리운영 직렬 등)은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됨.

<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률 주요 개정내용 >

<b>「지방자치법」</b>	
•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규정(제103조제2항)	
<b>「지방공무원법」</b>	
•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(제6조)	
※ 임용권 :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	
•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(제7조 등)	
•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(제30조의2)	
- 행정안전부-지방의회간, 자치단체의 집행기관-지방의회간, 지방의회 상호간 (광역의회-기초의회, 기초의회 상호간) 인사교류 근거 추가	
• 지방의회의 신규 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(제32조 등)	
-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	
<b>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</b>	
•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(제3조 등)	

< 시의회사무처 정원 내역 >

(2022.11월 현재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	임 기 제							관 리 운 영			전 문 경 령 관	별 정 직	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1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6급			7급 이하
정원	429	209	6	30	95	78	26	2	158	1	13	21	74	41	7	1	21	2	19	4	9



현행				개정안			
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				2. (현행 제4호와 같음) 3. (현행 제5호와 같음)		

-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위임 근거가 상실된 시의회사무처장의 임용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임.
- 다만, 법률 개정과 시행 후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입법공백과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변경사항 등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지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3일  
발 의 자: 김지향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경훈, 김용일, 김춘곤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  
박철성, 서상열, 송경택,  
유정인, 이봉준, 이영실,  
이종태, 최민규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16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, 교육, 훈련,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함(안 별표 5 □ 행정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□ 행정국 표 주관부서 중 인사과란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